

# 대구직할시건축조례 개정조례

## 대구직할시건축조례 개정조례

대구직할시조례제1665호

대구직할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구직할시건축조례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건축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2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3조 (용도제한)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영부표 제4항(근린생활시설)중 제6호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2. 격리병원
3. 직업훈련소 시설강습소
4. 일반업무시설
5. 일반숙박시설
6. 판매시설
7. 위락시설
8. 공장
9. 창고시설
10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11. 운수시설
12. 자동차관련시설
13. 동물관련시설
14. 쓰레기오물처리장
15. 교정시설
16. 묘지관련시설
17. 아파트

제4조 (건폐율)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.

제5조 (건축물의 높이)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 (대지안의 조경)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

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제곱미터로 한다. 다만,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.

제8조 (대지안의 공지)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: 2미터
2.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: 1미터

#### 제3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9조 (지구의 세분)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제1종 미관지구: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2. 제2종 미관지구: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3. 제3종 미관지구: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
4. 제4종 미관지구: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
5. 제5종 미관지구: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

제10조 (건축심의) ① 대구직할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(단독주택을 제외한다)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 (용도제한) ①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

할 수 없다.

1. 도매시장·시장
2.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·건재상·공구상·철물점
3. 공장
4. 창고시설
5. 교정시설
6. 격리병원
7. 정육점, 세탁소, 장의사
8. 묘지관련시설
9. 자동차관련시설
10. 단독주택(공관을 제외한다)·공동주택·기숙사

② 제 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③ 제 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④ 제 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⑤ 제 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제 12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제 1종 미관지구: 300제곱미터
2. 제 2종 미관지구: 200제곱미터
3. 제 3종 미관지구: 200제곱미터
4. 제 4종 미관지구: 150제곱미터
5. 제 5종 미관지구: 200제곱미터

제 13조 (대지안의 공지)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 1종 미관지구: 3미터
2. 제 2종 미관지구: 3미터
3. 제 3종 미관지구: 2미터
4. 제 4종 미관지구: 2미터

제 14조 (건축물의 높이) 제 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5조 (건축물의 규모)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)은 다음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,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 1종 내지 제 3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하다.

(단위: 미터)

구 분	건축물의 앞면길이	건축물의 옆면길이
제 1종 미관지구	15	8
제 2종 미관지구	10	6
제 3종 미관지구	15	9
제 4종 미관지구	—	—
제 5종 미관지구	10	6

(단위: 제곱미터)

층 의 수	건 축 면 적
3 층 이 하	100
4 층 - 10 층	150
11 층 - 15 층	400
16 층 - 이 상	500

제 16조 (부속건축물의 규모)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7조 (건축물의 모양)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·담장·대문의 양식·구조·형태 및 색채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8조 (건축물의 부수시설 등)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·장독대·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.

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·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.

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.

####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 19조 (용도제한)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영부표 제 4 항 (근린생활시설)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2. 격리병원
3. 숙박시설
4. 판매시설
5. 위락시설
6. 관람집회시설
7. 공장
8. 창고시설
9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를 제외한다)
10. 교정시설
11. 묘지관련시설

####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 20조 (용도제한)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단독주택(공관을 제외한다)·공동주택·기숙사
2. 종교시설
3. 격리병원
4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)
5. 시장
6. 위탁시설
7. 관탕장
8. 공장
9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를 제외한다)
10. 자동차관련시설
11. 동물관련시설
12. 쓰레기오물처리장
13. 교정시설
14. 묘지관련시설

### 제 6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21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제 1 종 공지지구: 500제곱미터
2. 제 2 종 공지지구: 400제곱미터
3. 제 3 종 공지지구: 200제곱미터

제22조 (대지안의 공지) 제 1 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: 4미터
2.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: 2미터

### 제 7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23조 (용도제한)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발전소
2. 제련소
3. 요업공장
4. 화학공장

제24조 (건축물의 높이) 시장은 항공기의 이 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 8 장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25조 (용도제한)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.

1.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
2. 농수산물시험장 및 검사소
3.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

4.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
5. 수족관, 동물원, 식물원
6. 근린공공시설
7. 일용품소매점·이용원·미용원·약국·의원·대중음식점·일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

###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

제26조 (건축제한)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.

1. 자동차관련시설
2. 동물관련시설
3. 운동시설
4. 흥행·전람회·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 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

### 제10장 대지안의 조경

제27조 (대지안의 조경) ①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영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.

구 분	식 재 밀 도 (제곱미터당)	상 록 비 율 (퍼 센 트)
교목(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)	0.4본 이상	상 록 수 40 낙엽 수 60
관목(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)	0.6본 이상	

② 시장은 식수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·조각물·조원석·연못·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28조 (조경공사비의 예탁) ① 영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 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11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

제29조 (적용범위)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시장이 지정·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 (대지면적)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지역·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다음 각호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.

1. 도로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변: 2분의 1
2. 도로폭 40미터 미만의 도로변: 3분의 1

### 제12장 건축위원회

제31조 (기능) 건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영 제9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·조사 또는 건의한다.

제32조 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·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4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35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.

제36조 (전문위원)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

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37조 (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 (자료제출의 요구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39조 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0조 (비밀준수) 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13장 용적률

제41조 (용적률) 법 제40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.

1. 주거전용지역: 80퍼센트
2. 주거지역: 300퍼센트
3. 준주거지역: 500퍼센트
4. 상업지역: 1,000퍼센트
5. 전용공업지역: 공업지역·준공업지역: 300퍼센트
6. 자연녹지지역: 60퍼센트
7. 생산녹지지역: 150퍼센트

제42조 (용적률의 완화) ① 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·공원·광장·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·조정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6조 제1항(제41조)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.5배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8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 大邱直轄市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

### 第1章 總 則

第1條 (目的) 이 條例는 駐車場法(以下“法”이라 한다) 및 同法施行令(以下“令”이라 한다)에서 條例에 委任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供用 時間) ① 路上 駐車場의 供用 時間은 夜間 通行禁止 解除 1時間 以後부터 夜間通行禁止 1時間 前까지의 範圍內로 하되 市長이 따로 이를 定한다.

② 駐車場의 供用 時間을 短縮하거나 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用을 制限하고자 할 때에는 制限時間,

期間, 區域, 事由 등을 當解 駐車場에 揭示 하여야 한다.

**第3條 (駐車拒否 禁止)** 駐車場의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駐車를 拒否할 수 없다.

1. 自動車의 構造上 駐車가 不可能하거나 困難한 車輛
2. 發火性 또는 引火性 物質을 積載한 車輛
3. 駐車場의 構造設備을 損傷할 憂慮가 있는 車輛
4. 其他 駐車拒否의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

**第4條 (駐車料金)** ① 法 第9條 및 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路上 및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の 上限額은 “別表1”과 같이다.

② 建築物 附設 駐車場의 管理를 爲하여 駐車料金を 받고자 하는 者는 法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準하여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
**第5條 (料金徵收方法)** ① 駐車料金は 駐車場에 自動車を 駐車하는 者로부터 徵收하되 駐車時에 駐車料를 交付하고 料金徵收時에 領收證과 交換한다.

② 駐車場 管理者는 必要한 경우 令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回收駐車券 및 定期駐車券을 發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서의 料金は 回收駐車券 또는 定期駐車券을 發行한 때에 徵收한다.

## 第2章 路上 및 路外駐車場

**第6條 (駐車場의 公告)** 市長이 駐車場을 設置하여 供用을 開始하고자 할때에는 그 駐車場의 名稱, 位置, 規模, 供用時間, 供用開始日, 其他 必要한 事項을 公告 하여야 한다.

**第7條 (駐車場의 標識)** ① 駐車場의 標識는 道路交通法 第3條 및 同法施行規則 第3條의 交通安全標識를 準用한다.

② 第1項의 경우 市長이 管理하는 路外駐車場의 標識는 “別紙 第1號書式”과 같이 한다.

③ 路上駐車場의 利用에 關한 案内標識의 規格은 “別紙 第2號書式”과 같이 하고 路外駐車場의 利用에 關한 案内標識의 規格은 “別紙 第3號書式”과 같이 하며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 利用者가 容易하게 볼 수 있는 場所에 設置하여야 한다.

1. 駐車料金 및 徵收方法 (車種別 徵收金額 明示)
2. 加算金 徵收에 關한 事項
3. 駐車場의 供用時間
4. 其他 注意事項

**第8條 (駐車區劃線 表示 等)** ① 駐車區劃의 1臺當 標準規格은 幅2.5미터 길이6미터로 하되 駐車場 與件에 따라 標準 駐車區域의 길이 및 幅에서 0.5미터 加減할 수 있다.

② 駐車區劃線의 表示方法은 市長이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.

**第9條 (加算金)** ① 路上 및 市營路外駐車場에 駐車한 者가 出車時에 料金を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第4條 第1項의 料金과 同一한 額의 加算金を 賦課한다.

② 第1項의 加算金を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.

**第10條 (料金의 減免)** 路上 및 市營路外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 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駐車料金を 免除한다.

1. 道路交通法 第2條 第13號의 規定에 依한 自動車
2.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用車輛
3. 其他 市長이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自動車

**第11條 (料金의 還付)** ① 令 第4條 第3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駐車料金を 還付할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依하여 還付額을 決定한다.

1. 回收駐車券: 回收駐車券 1枚의 單價를 算出하여 使用할 수 없는 枚數에 對한 料金. 다만, 還付事由發生 當日駐車한 事實이 있을 경우에는 使用한 것으로 본다.
2. 定期駐車券: 殘餘期間에 對한 料金は 還付事由發生日 翌日로부터 適用하며 日 할로 換算한 金額

② 第1項에 依하여 還付申請이 있을 때는 大邱市財務會計規則에 規定된 過誤納金의 返還請求 및 節次에 따라 當該年度 歲入에서 返還하며, 駐車場을 代行하였을 경우에는 代行運營者가 返還한다.

다만, 還付申請과 同時에 殘與分 回收駐車券 및 定期駐車券은 返還하여야 한다.

**第12條 (駐車場 管理者의 責任)** ① 駐車場 管理者는 이 條例 또는 管理規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駐車場의 施設維持等 善良한 管理者의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路外駐車場의 管理者는 駐車한 自動車의 保管에 對하여 第1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自動車의 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지 못한다.

## 第3章 建築物 附設駐車場

**第13條 (建築物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)** ① 駐車場整備 地區 안에서 延面積 1,0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延面積 150平方미터 마다 駐車臺數 1臺의 駐車場을 그 建築物 또는 垜地 안에 設置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建築物의 延面積에는 屋內駐車場 面積을 除外하며 1臺未滿의 單數臺數는 버린다. 以下 같다.

② 第1項 地區 以外的 都市計劃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住居地域, 準住居地域 또는 準工業地域 안에서 延面積 1,000㎡ 以上の 建築物로서 영 第6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에 定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그 用途에 쓰이는 部分의 연면적 200㎡ 마다 주차대수 1臺의 駐車場을 그 建築物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있어서는 “別表2”의 基準에 따라 屋外에 駐車할 수 있는 施設을 하여야 한다.

- ④ 再開發事業施行이나 特定街區整備地區 또는 都市設計에 의한 建築 其他 市長이 定하는 區域內의 建築에 있어서는 建築物別 停車場 設置 代身에 그 區域의 共同停車場을 第1項의 基準에 따라 設置할 수가 있다.
- 第14條 (自動車の 進入路 等)** ① 建築物 附設 停車場의 進入路는 法施行規則 第3條 第3號 및 第4號 規定에 의한 路外停車場의 出入口 設置 基準에 依한다.
- ② 建築物 附設 停車場의 進入路 (地下路 進出入하는 傾斜路,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包含한다.)는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設置하여야 한다.
1. 駐車臺數 10臺未滿의 停車場: 1次線
  2. 駐車臺數 10臺以上의 停車場으로서 出口와 入口가 分離되지 않는 停車場: 2次線
- ③ 建築物 附設 停車場의 1個所 바닥面積의 合計가 1,000平方미터 以上인 경우에는 出口와 入口를 따로 設置하여야 하며 出口와 入口의 幅은 다음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.
1. 駐車面積 1,000平方미터 以上 2,000平方미터 未滿: 1次線
  2. 駐車面積 2,000平方미터 以上: 2次線
- ④ 第2項 第3項에 依한 建築物 附設 停車場 自動車 進入路의 幅은 다음과 같다.
1. 1次線: 3.5미터以上
  2. 2次線: 5.5미터以上

**第4章 補則**

- 第15條 (代行運營)** 市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營停車場의 管理를 區廳長에게 委任하거나 法人 또는 個人으로 하여금 運營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代行運營자가 法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管理規程을 定하여 施行하여야 한다.
- 第16條 (代行料)** 前條의 代行에 있어서 代行者는 月收入 額의 3割에 相當하는 代行料를 市長에게 納入하여야

한다.  
다만,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代行料를 減免할 수 있다.

**第17條 (代行權 讓渡制限)** 代行者는 市長의 事前 承認없이 代行權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지 못한다.

**第18條 (代行申請)** 法人 또는 個人이 市營 停車場의 運營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市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1. 申請者 住所, 姓名
2. 位置
3. 面積
4. 使用期間
5. 事業計劃書

**第19條 (簡易路外停車場)** ① 市長은 停車場 需要上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으로 하지 않는 簡易停車場의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.

다만, 都市計劃의 施行上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.

② 簡易路外停車場 管理 方法에 關하여는 法 第15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.

**第20條 (施行規則)**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.

**附 則**

- ① (施行日) 이 條例는 198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.
- ② (廢止條例)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大邱市 共營有料停車場設置 및 運營條例(1973. 4. 6 條例 第778條) 및 大邱市停車場整備地區內 建築條例(1977. 1. 14 條例 第994號)는 이를 廢止한다.
- ③ (經過措置) 大邱大 共營有料停車場設置 및 運營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路上停車場은 이 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.

**주 차 장 요 금 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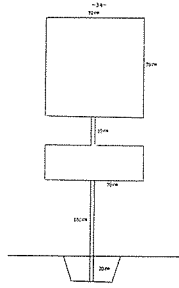
(별표 1)

(단위: 원)

지역별	차종별	주차요금 (30분당)	회수권 (1일)	정기권제 (월)		
				전일	주간	야간
1 급지	보통자동차	170	2,040	51,000	25,500	25,500
	소형자동차	120	1,440	36,000	18,000	18,000
2 급지	보통자동차	120	1,440	36,000	18,000	18,000
	소형자동차	70	840	21,000	10,500	10,500

※ 보통자동차 중 영업용 승용차가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하기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주차장에 임시 정차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30원을 징수한다.

비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지 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li> <li>2. 주차시간이 30분미만인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한다.</li> <li>3. 주간은 08:00부터 20:00까지 야간은 20:00부터 익일 08:00까지로 한다.</li> <li>4. 차종별 구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(별표 1)에 의하되 법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차는 제외한다. 다만, 대형 특수 자동차는 보통자동차에, 소형특수자동차는 소형보통자동차에 준하여 취급한다.</li> </ol>
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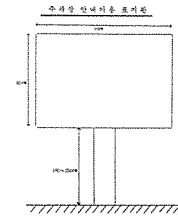


재 료	색 채		
	바 탕	글씨(고딕)	주차방법
철 판	하 늘 색	흰 색	바 로 둠 가 로 둠 모 로 둠

### 옥외 주차시설 기준

(별표 2)

구 분	옥외주차대수
연 면 적 2,000평방미터 이상 5,000평방미터 미만	소요주차대수의 $\frac{20}{200}$ 이상
연 면 적 5,000평방미터 이상	주요주차대수의 $\frac{30}{100}$ 이상



구 분	색 채
바 탕	하늘색
글씨	흰색

재 료	색 채	
	바 탕	글씨(고딕)
철판 또는 목재	흰 색	검 정 색

### 附 則

- ① (시행일) 이 條例는 1982. 12. 1.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條例施行 당시 이미 建築許可 또는 承認된 것과 신청이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大邱直轄市建築委員會審查基準

### 目 的

本 基準은 建築關係 法令에 定한 事項과 都市環境 保存上 必要한 建築物 및 周邊 空間의 有益한 造成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細部의 調整하여 實効性있는 都市建築行政 實現을 爲함.

### 造 景 審 查 基 準

#### 1. 根 據

- 建築法 施行令 第15條
- 大邱直轄市 建築條例 第27條

82. 7. 7. 施行

#### 2. 基 準

##### 가. 造景面積

- 1) 生育可能한 位置로서 最小幅 60센치미터 以上인 面積
- 2) 枝下高 2미터 以上
  - 樹冠 高: 1미터 以上
  - 樹冠 幅: 1미터 以上

• 胸高直徑: 7 센치미터 以上인 樹木

• 路線 美觀街路邊 垜地안의 空地에 植栽할 境遇는 水平投影面積

나. 屋上造景(土壤以外的 建築物 또는 構造物等에 接近 造景하는 境遇)

○ 植生에 支障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하고 盛土 깊이는 아래 基準值 以上으로서 樹種에 따라 成長에 支障이 없도록 한다.

樹 高	盛 土 깊 이
2미터 미만	60센치미터 以上
2미터 이상 3미터 미만	70 " "
3미터 以上	80 " "

※ 建築 455-19225(82. 9. 10) 로 建築行政事業 指示

- 대지내 조경시 관목의 10% 以上은 무궁화 植栽
- ※ 別添 조경설계 예시도(일반建築物 美觀地區內 建築物)

## 조경 설계 예시도 1. (일반건축물)

배치도

조경면적 산출표

대지면적	..... m <sup>2</sup>
조경면적	A m <sup>2</sup>
산출근거	대지면적×법적비율=A m <sup>2</sup>
대지면적의 %이상	A m <sup>2</sup> 이상이므로 적합
조경면적산출	계 ..... m <sup>2</sup>
.....	.....
.....	.....
.....	.....

수종수형 및 수량

구분	산출근거	수량	수고별수량		비고
			2m이상	보통	
교목	A m <sup>2</sup> ×0.4본	B본	0.6B본	0.4B본	
상록수	B본× $\frac{40}{100}$	○○본	○○본	○○본	
활엽수	B본× $\frac{60}{100}$	○○본	○○본	○○본	
관목	A m <sup>2</sup> ×0.6본	○○본	관목의 10%는 부류구분		
잔디		○○ m <sup>2</sup>			

※ 아파트는 교목류의 60%이상은 수고 3m 이상.

식수범례표

구분	규격	수종	범례
교목	큰키	상록수	◎
		낙엽수	⊕
관목	보통키	상록수	○
		낙엽수	⊗

※ 아파트의 큰키나무는 수고 3m 이상

설계 개요

본 건축물은 ○○지역내 대지면적 ○○ m<sup>2</sup>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 15 조 및 대구직할시 건축조례 제 27 조 규정에 의거 식수면적은 대지면적의 ○○%로 계산하였으며, 조경면적과 식재수량은 상기 산출표와 같음.

## 조경 설계 예시도 2. (미관지구내 건축물)

배치도

인도

차도

인도

1 m 이상  
수관폭

수고 3 m 이상

수관고 1 m 이상

지하고 2 m 이상

거수목조경 단면도

- 흉고직경 : 7 cm 이상
- 수종 : .....

대지내공지 폭 : 2 m ~ 3 m

대지경계선

거수목

대지내공지는 마감된 인도와 동일재료 동일면처리

※ 법정조경면적 적용 :

※ 조경부지는 조경설계 예시도 1 참조



機械式駐車場審査基準

82. 7. 7施行

82. 11. 11改定

1. 昇降機式 駐車場

○對 象

- 土地利用上 不특이한 境遇로서 建築計劃上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고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함.
-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 
市場, 百貨店,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分양 對象 建築物

2. 二段式 駐車場

○對 象

- 土地利用上 不특이한 境遇로서 建築計劃上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一定 規模以上 建築物은 屋內에 設置할 수 있음.
-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 
市場, 百貨店,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分양 對象 建築物
- 建築物 規模  
延 面 積 : 3,000m<sup>2</sup> 이상  
層 數 : 5層 이상

3. 垂直循環式 駐車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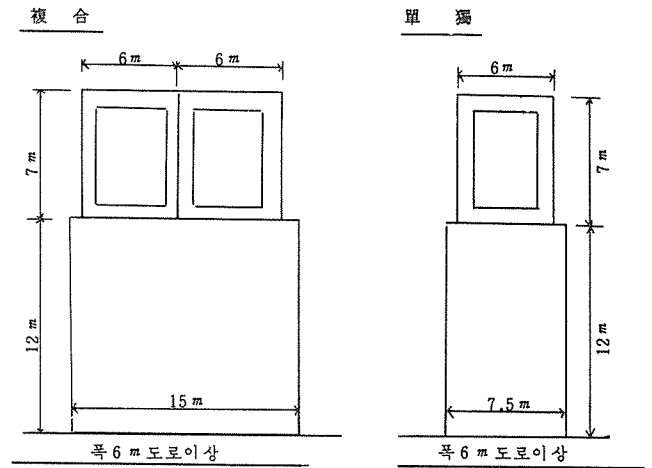
- 土地利用上 不특이한 境遇로서 建築計劃上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고 管理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아래 對象 基準에 적합한 建築物에 限함.
- 管理能力 不認定 建築物  
市場, 百貨店, 아파트 等 이와 유사한 分양 對象 建築物

○對 象

5層以上 建築物로서 法規上 駐車 20臺以上인 建築物

○基 準

- 2組以上으로 하되 1조당 10臺以上
- 昇降場前庭의 길이 : 出入口 方向 12m 이상
- 出入口는 地面에 두되 屋內建築物式
- 昇降場前庭의 幅 : 1組當 昇降場 中心에서 左右 3.75m 이상
- 昇降場前面 道路幅 : 6m 이상 道路에 連接



4. 其他 機械式 駐車場

○施行保留

아파트設計審査基準

1. 目 的

- 아파트에 關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共同 住宅으로서 住居環境을 改善하고,
- 隣近住居의 保護와 아파트의 質的向上等 아름다운 都市環境을 造成함에 있음.

2. 對 象

10世帶 以上の 아파트

3. 法的根據

○ 建築法 第44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97條

4. 統制 및 審査計劃

- 垜地의 規模 : 800m<sup>2</sup> 以上
- 垜地의 隣接 道路 : 6m 以上
- 建 蔽 率 : 40% 以內, 但 高度地區 60% 以內
- 容 積 率 : 150% 以下 (20世帶 미만일때)
- 層數制限 : 5層 以下 (20세대 미만일때)  
12層 以下 (20세대 이상일때)  
但, 土地利用上 不특이하거나 주변의 환경에 장애가 없을때는 例外임.

○ 建築物의 構造

- 世帶間 間壁은 空間쌓기에 반드시 防音施設
- 主要벽두께 19cm 以上
- 발코니가 大路邊에 向할 境遇 반차페나 造景施設
- 외부 현관 높이 : 2.3m 以上
- 외부 현관 디딤판 높이 : 10cm 以上
- 層 高 : 2.7m 以上
- 발코니의 有効幅 : 1.0m 以上
- 屋上 및 발코니 난간 파이프 : 공간간격 10cm 以下로 하고 어린이 발디딤 높이에서 높이 1.1m 以上

○ 建物의 配置

- 西面이 閉鎖되어서는 안됨.

○ 團地內 道路

- 主要出入道路는 6m 以上
- 團地內 道路는 鋪裝하여야 한다.

○ 駐 車 場

- 20坪未滿과 再開發 地區에 있어서는 주차방법에 依한 駐車臺數

- 世帶當 專用面積 20坪以上  
商業地域：延面積 200㎡마다 1臺  
其他地域：延面積 400㎡마다 1臺
  - 어린이 놀이터
    - 世帶當：3.3㎡ (1坪)
    - 놀이터의 最小幅은 5m 이상
    - 必須施設：그네, 미끄럼틀, 철봉, 시소, 모래사장 중 1個 以上  
但, 高度地區 再開發地區 例外
  - 下水道
    - 團地內 下水道設置
  - 造景
    - 造景(建築法 施行令 제15조 조례 제27조)
    - 垜地面積의 1/10以上
    - 造景面積의 最小幅은 0.6m 以上
    - 場所選定：生育可能地(옥상식수는 제외)
    - 식재면적 산출 표시
    - 담장：道路邊 투시담장
    - 수벽-대지사정에 따라 설치  
교목의 수종지정-느티나무, 은행나무, 푸라타나스, 백합수, 메타세코이아, 전나무, 히말라야시다, 벽오동
    - 수고 3m 이상이고 胸徑 5cm 이상인 것이 교목록의 60% 이상이고 이때의 터파기는 幅80cm, 깊이 80cm 이상
  - 汚物収去 施設
    - 世帶別 設置
    - 멘홀 設置時  
位置：다스트슈트 下단  
깊이：1m 以內  
수거구：収去到 便利하게 設置  
但, 1層바닥이 地盤보다 1m 以上 높을시 例外
  - 에너지 및 資源利用
    - 취사용 가스施設(30世帶以上) 을 권장한다.
    - 煖房 熱量 均配를 爲한 上下向 절층식 配管(6層 以上인 경우)
    - 煉炭가스 防止가 可能한 構造로 한다.
    - 지하수 開發 의무화(20世帶以上)
      - 생산량 세대당 1일 1Ton 以上
      - 식수와 분리배관
      - 수조세대당 1Ton 이상 저장
      - 취수관지름 2인치 이상
  - 保安燈設置
    - 垜地四面에 1個所씩 設置
  - 日照圈 및 眺望保護
    - 正北에 기존 住宅있는 경우 기존 住宅의 대지경계 선으로 부터 아파트 높이 以上 離隔  
但, 土地利用上 其他 부득이한 경우 例外
  - 分讓方法
    - 基礎 中間檢査 받은후 分讓(住公, 指定業體, 市營은 除外)
    - 分讓安內書 內容改善
    - 分讓面積明示：專用, 公用面積
    - 써비스面積明示：다용도실, 베란다 等
    - 世帶別規模(0坪型)는 專用面積으로 統一
  - 不實工事豫防
    - 工事監理者 工程月報提出(翌月 5日 까지)
    - 有資格者 現場代理 常駐措置
    - 建築職公務員 現場確認 確行
5. 建築許可  
아파트 建築許可는 建築委員會의 事前審査를 거쳐야 한다.
6. 其他
- 本 基準에 規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建築法, 住宅建設促進法, 其他法 및 大邱市 建築條例의 規定에 依한다.

## 아파트建立에 따른 下水道施設指針

### 目的

- 아파트 住居 環境改善
- 下水道 処理 円滑

### 方針

- 아파트 建立地 周邊 下水道施設 義務化

### 施行要綱

- 아파트 許可 申請書에 下水道施設圖書를 作成 添付하여야 한다.

- 規格：大邱市 指定規格

- 區間：周邊道路의 測構(기설 下水道에 連結하여야 한다)

- 下水道에 關한 設計審査 施工監督 및 竣工檢査는 區廳 建設課長의 責任下에 施行한다.

### 施行日

- 이 指針은 1979. 7. 1부터 施行한다.  
但 本指針 施行以前에 許可된 것은 除外한다.

# 聯立住宅設計審査基準 (20세대미만)

## 目的

聯立住宅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住居環境을 改善하고 아름다운 都市環境을 造成함에 있음.

## 法的根據

建築法 第44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97條

## 建築計劃

- 垡地는 世帶別로 區劃할 수 있다. 이 境遇 透視式 담장 또는 樹壁으로 하여야 한다.
- 建物の 形態는 가늘고 긴 長方形의 形態를 止揚한다.
- 聯立住宅의 容積율은 다음과 같다.
  - 2層 : 100%以下
  - 3層 : 120%以下
- 各地帶마다 最小限의 住居施設 寢室 2個以上 便所와 부엌은 各各 1個所 以上 갖추어야 한다.
- 垡地內에는 世帶別 出入을 爲한 通路를 4m 以上

確保하여야 한다.

- 地下水 개발 의무화(20세대이상)
  - 생산량 세대당 1일 1톤 이상
  - 식수와 분리배관
  - 수조세대당 1톤이상 저장
  - 취수관지름 2인치 이상

## 建築許可

- 聯立住宅의 建築許可는 建築委員會의 事前 審査를 거쳐야 한다.

## 用途制限

- 聯立住宅에는 他用途를 複合用途로 하여 建築할 수 없다. 다만, 住居生活을 害하지 않은 경우는 例外로 한다.

## 其他

- 其他 本 基準에 規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建築法 및 大邱直轄市 建築條例의 規程에 依한다.

## 市場 및 建築許可 規制

- 都市計劃施設인 市場의 土地利用度增進, 市場現代化促進, 職住近接에 依한 交通難解消, 零細商人 住居 確保를 爲함.

- 아파트 세대수 20세대 미만
- 市場과 아파트의 出入技能을 完全 分離計劃
- 施行日字
  - 80. 1. 11.

## 住居專用地域內市場建築規制

### ○地区指定

地区別	區副整理 事業施行	住居專用 地域告示	同地域內 市場敷地 變更 (住居地域)	位置
大明地区	67. 8. 10	建設部告示 第 187 号 74. 6. 12	建設部告示 第 37 号 76. 3. 27	大明洞 872番地 大明洞 1040番地
泛魚地区	70. 3. 12	"	"	泛魚洞 291番地 泛魚洞 442-1番地 晚村洞 640-1番地
壽城地区	72. 4. 10	"	"	黄金洞 746番地 上 同 44番地 池山洞 994外 5筆

하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.  
1980. 12. 20.

건설부장관

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: 다음 각호의 건축물 다만 "별표"에 계기하는 시·군의 행정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,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.

1. 단독주택(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) · 공동주택 · 기숙사
2.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부표 제 4 항 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)
3. 노유자시설 · 의료시설
4. 교육 및 연구시설 · 체육관 다만, 시장 · 군수가 기능상 열손실 방지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부분을 제외한다.
5. 업무시설
6. 숙박시설
7. 백화점 · 슈퍼마켓 · 상점
8. 위락시설
9. 관람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 · 전시장

## ○建築規制

- 높이 8m 以內 2層以下
- 1層以下 : 店舖
- 2層 : 아파트(20世帶未滿)

## ○施行日字

- 1980. 4. 28.

## 건설부 공고 제145호

건설부 공고 제123호(1979. 9. 8)를 폐지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